

**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
U-영등포통합관제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**

2025. 3. 27.
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5년 3월 10일

나. 발 의 자: 유승용 의원 외 3명

다. 회부일자: 2025년 3월 20일

라. 상정일자: 제25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(2025. 3. 24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유승용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5조에 기반하여, 어린이보호구역, 우범지역, 재난·재해 우려지역 등 공공안전이 필요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, 이를 통해 구민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고 영상정보의 체계적 관리로 개인정보 보호와 공공안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수정(안 제1조~제3조)

-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5조)
-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운영 사항 신설(안 제25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류데레사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구체화하고, 신규 설치 후 평가·환류과정을 신설하여 설치목적의 효과를 제고함으로써 공공안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 - 안 제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)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5조제1항에 근거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가 필요한 곳을 보다 구체화하여 명시함
 - 안 제25조(위원회 기능)는 위원회 심의·자문 사항에 “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장소의 우선순위 결정”을 명문화함
 - 그 밖에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일부개정(2023.03.14.)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가 “고정형”과 “이동형”으로 구분됨에 따라, 해당 사항을 제명 및 정의 등에 반영함.
- 검토 결과
 -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토대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비용을 살펴보면, 57대 신규 설치하기 위해 12억 6,000만원(시:구 5:5)을 편성하였으며, 이는 1대당 약 2,200만원으로 산출됨. 이렇듯 영상정보처리기기 신규 설치 시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가 가장 필요한 곳 또는 설치목적의 효과가 높은 곳에 설치해야 할 것임.
 - 한편, 현행 조례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장소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,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적재적소에 설치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를 구체화하고, 위원회의 심의·자문 사항에 “우선순위 결정”을 명문

화하였음.

-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신규설치 후 설치효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다음연도 설치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평가·환류과정을 신설함으로써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효과를 극대화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하고 영등포구의 공공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U-영등포통합관제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유승용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01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5. 3. .

발 의 자: 유승용, 최인순, 전승관,
정선희 의원(4인)

1. 제안이유

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5조에 기반하여, 어린이보호구역, 우범지역, 재난·재해 우려지역 등 공공안전이 필요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, 이를 통해 구민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고 영상정보의 체계적 관리로 개인정보 보호와 공공안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3조)

나.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다.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(안 제25조)

3. 개정안 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개인정보 보호법」

나. 예산조치: 필요시 반영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U-영등포통합 관제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U-영등포통합관제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U-영등포통합관제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U-영등포통합관제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영등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”를 “영등포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“영상정보처리기기”란”을 ““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(이하 “영상정보처리기기”라 한다)”란”으로, “지속적으로 설치되어”를 “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”로, “다음”을 “장치로서 다음”으로 하고, 같은 호 가목 중 “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”를 “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”로 하며, 같은 호 나목 중 “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”를 “설치된 기기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”로, “사람이 유·무선”을 “자가 유무선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,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”를 “영상 형

태의 개인정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 중 “수집되는 영상정보의 생성”을 “영상정보의 수집, 생성, 연계, 연동”으로, “검색, 재생”을 “검색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구청장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.

1. 범죄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
가. 어린이보호구역,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주변, 여성안심귀갓길 등 보행 안전 취약지역

나. 지하도·육교 등 범죄 취약 시설, 사건·사고 다발 우범지역 및 유흥가 밀집 지역

2. 교통 및 위법행위 단속이 필요한 지역

3. 폭설, 폭우, 다중운집인과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예방·대비·대응이 필요한 지역

4. 공공 시설의 안전 및 관리, 화재 예방이 필요한 지역

5.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

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신규로 설치할 경우 범죄예방, 교통단속 및 재난·사고 예방 효과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.

제2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장소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서울특별시 영등포구</u> <u>영상정보처리기기 및 U-</u> <u>영등포통합관제센터</u> <u>설치 · 운영에 관한 조례</u>	<u>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정형</u> <u>영상정보처리기기 및 U-</u> <u>영등포통합관제센터</u> <u>설치 · 운영에 관한 조례</u>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5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<u>영등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</u>의 효율적 운영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-영등포통합관제센터의 설치 · 운영과 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기준,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<u>영상정보처리기기</u>”란 일정한 공간에 <u>지속적으로 설치되어</u>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 · 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<u>다음</u>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영등포구 고정형</u> <u>영상정보처리기기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 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“<u>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</u> (이하 “<u>영상정보처리기기</u>”라 한다)”란 --- <u>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</u> ----- ----- <u>장치</u> <u>로서 다음</u> ----- -----.

가. “폐쇄회로 텔레비전”(CC TV : Closed Circuit Television):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·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

나. “네트워크 카메라”: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·관리하는 사람이 유·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·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

2. (생략)

3. “개인영상정보”란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·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,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

가. -----

-----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---

나. -----
----- 설치된 기기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-----
----- 자가 유무선 -----

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

-----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-----

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
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
는 정보를 말한다.

4. (생 략)

5. “처리”란 영상정보처리기기
에 의하여 수집되는 영상정보
의 생성, 기록, 저장, 보유, 가
공, 편집, 검색, 재생, 출력, 정
정(訂正), 복구, 이용, 제공, 공
개, 파기(破棄), 그 밖에 이와
유사한 행위를 말한다.

6. · 7. (생 략)

제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)

① 구청장은 범죄 예방, 교통 단
속, 위법행위 단속, 재난·재해
예방, 시설물 관리 목적 등 공공
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
인정되는 곳에 영상정보처리기
기를 설치할 수 있다.

-----.

4. (현행과 같음)

5. -----
----- 영상정보의 수집, 생
성, 연계, 연동-----
----- 검색-----

-----.

6. · 7. (현행과 같음)

제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)

① 구청장은 「개인정보 보호
법」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범
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영
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
다.

1. 범죄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
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
하는 지역

가. 어린이보호구역, 노인 및
장애인 복지시설 주변, 여
성안심귀갓길 등 보행 안
전 취약지역

나. 지하도·육교 등 범죄 취약

② · ③ (생략)

<신설>

제25조(위원회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한다. 다만, 방법용 CCTV의 설치 10개소 미만이거나 긴급한 설치를 요하는 경우 관할 경찰

시설, 사건·사고 다발 우범

지역 및 유흥가 밀집 지역

2. 교통 및 위법행위 단속이 필

요한 지역

3. 폭설, 폭우, 다중운집인파 등

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

의 예방·대비·대응이 필요한

지역

4. 공공 시설의 안전 및 관리,

화재 예방이 필요한 지역

5.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안전

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

는 지역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

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신규로

설치할 경우 범죄예방, 교통단

속 및 재난·사고 예방 효과 등

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

과를 다음 연도 영상정보처리기

기 설치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.

제25조(위원회 기능) -----

---. -----

서와 협의하여 설치를 진행하고 위원회에 사후보고 할 수 있다. 1. ~ 4. (생략) <u>5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장소 선정에 관한 사항</u> 6. · 7. (생략)	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<u>5.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장 소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</u> 6. · 7. (현행과 같음)
--	---